

보도자료

2012. 6. 18.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최승원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2. 6. 18. 15: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

1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①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하여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매우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하였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유형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권고함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의 형량범위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원 - 300만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원 - 500만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200만원 - 700만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원-1,5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②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의 경우에는 일 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 행을 가중하여 처벌함
- ③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 고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 설정
- ④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 재하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비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함

2 폭력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① 이른바 ‘주폭’, 즉,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 는 사회적 위해범에 대하여는,
 - 1)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 2)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두어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 3) 아래와 같이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 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명백히 규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② 보복목적의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가중 처벌하기로 함
- ③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역시 가중 처벌

③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①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종래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
- ②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공정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하여 가중 처벌함
- ③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거래 규모가 커서 사회적 피해가 심했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기로 함
- ④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함

④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권리침해행위(등록권리침해행위 및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종래의 관행보다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
- ②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크거나,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한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③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⑤ **교통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①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②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유형에 대하여는 범죄의 중대성 고려하여 살인범죄의 한 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한 권고형량범위 설정

⑥ **향후 일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 2012. 6. 20 ~ 2012. 7. 19. : 관계기관 의견 조회
- 2012. 7. 1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에서 당일 16시에 개최)
- 2012. 8. 20. :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련**

- 2012. 6. 29. : 양형기준 관보 게재(시행은 2012. 7. 1.)

※ 다음 회의는 2012. 8. 20.(월) 16:00 개최 예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매수 및 이해 유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원 - 300만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원 - 500만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200만원 - 700만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원 - 1,5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제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제3유형에 포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원 - 300만원	- 10월, 100만원 - 500만원	8월 - 2년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300만원	6월 - 1년, 250만원 - 400만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원 - 300만원	- 10월, 200만원 - 800만원	8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원 - 600만원	6월 - 2년, 500만원 - 1,000만원	1년 - 3년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제2유형에 포함

▷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제1유형에 포함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원 - 90만원	7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300만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원 - 90만원	70만원 - 200만원	4월 - 1년, 100만원 - 400만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주요 특징

- 선거범죄는 일정액(당선인 100만원, 선거사무장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효력이 있음

⇒ 기존의 양형기준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당선 유·무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벌금형 양형기준'도 설정

-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에 대하여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매우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형량범위는 위 ①항 참조)하였고, 특히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유형의 경우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함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함(형량범위는 위 ①항 참조)
-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의 경우에는 법정형 및 선거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범행보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하여 처벌함
- 선거운동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위반한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은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선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 설정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비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함

II. 폭력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2 주요 특징

- 상해, 폭행, 협박범죄에 대하여 범행의 결과를 중심으로 범죄 유형을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보복목적** 범행 또는 각종 **특별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행위유형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더 높은 형량범위 설정
- 이른바 '**주폭**', 즉,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회적 위해범에 대하여는,

- 1) 상습범과 누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 2)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두어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 3) 아래와 같이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명백히 규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은 가중 처벌
-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역시 가중 처벌

III.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 시세조종행위로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 실행 권고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2 주요 특징

-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여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임
- 이와 같은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하여 가중 처벌함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사기범죄 양형기준 비교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일반사기		
구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감경	기본	가중
1	1억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2	1억 이상, 5억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3	5억 이상, 50억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4	50억 이상, 300억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3년-6년	5년-8년	6년-9년
5	300억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거래 규모가 커서 사회적 피해가 심했던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경우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기로 함
- 특히,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함

IV.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3년

※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를 포함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권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4.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② 주요 특징

- 최근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사건,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분쟁 등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권리침해행위(등록권리 침해행위 및 저작권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종래의 관행보다 엄정한 양형기준 설정
-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크거나,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을 침해한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관한 침해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

분하고, '국외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량범위 설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 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 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V. 교통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범죄 유형 및 형량 범위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주요 특징

-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 설정
-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유형은 범죄의 중대성 고려하여 살인범죄의 한 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한 권고형량범위 설정

VI. 향후 일정

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관련

- 2012. 6. 20 ~ 2012. 7. 19. : 관계기관 의견 조희
- 2012. 7. 16. :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에서 당일 16시에 개최)
- 2012. 8. 20. : 양형기준 최종 의결

②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 관련

- 2012. 6. 29. : 양형기준 관보 게재(시행은 2012. 7. 1.)
-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2. 8. 20.(월) 16:00 개최 예정
⇒ 선거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